실•무
강•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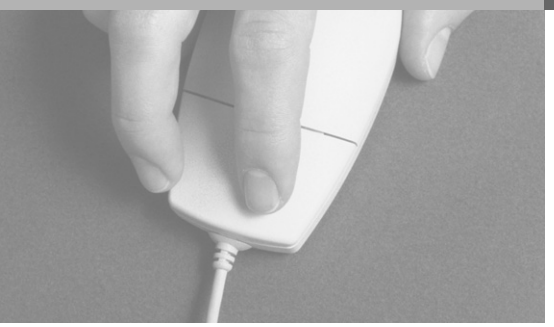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서기관 | 최 두 선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판공비로 친숙하게 알려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예산으로 편성된 경비를 말하며 주로 회의비, 격려비, 경조사비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비라고 할 수 있으며 긍국적으로 예산의 집행목적이 지방 자치단체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의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에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의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이에 맞는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1년여간 관련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동 집행기준만 보면 집행가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지난해 6월 13일 개정하였으며 동시행령을 근거로 지난 2월 13일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업무추진비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조문 (2007.6.28)〉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결산 · 수입 · 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 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고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II. 제정방향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23호, 2007. 6. 28. 공포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상 기간제한에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공직선거법」상 기간제한을 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내용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업무추진비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동 규칙 제2조)

※ 규칙 적용대상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축의 · 부의금품을 제외하고 시책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구분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시책추진업

무추진비로 집행할지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 각호의 성격에 맞게 집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집행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을 구체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명확화 함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직무활동에 해당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동 규칙 제3조)

4. 업무추진비의 집행의 제한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제1호나목 · 다목, 제2호가목 · 다목 · 라목, 제3호나목 · 다목, 제4호나목 · 다목 · 마목, 제5호가목, 제6호라목,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

【해 설】

– 동 규칙 제4조에 의거 위의 별표 각 호 13개 목에 대하여는 기간제한을 받는다.

☞ 별표 4호 라목의 단서 규정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으나 본문의 경우 기간제한을 받으므로 동 목의 본문을 포함하면 총 14개 목에 대하여 기간제한을 받음을 주의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1) 공직선거법령 범위 내에서 법제화

선거법 저촉여부를 일일이 확인 없이 집행 가능토록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 · 법제화하고 있다

2) 업무추진비 관련 공직선거법령 규정

⑴ 기부행위의 정의(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

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⑵ 상시 기부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13조)

재 출마하려는 지방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⑶ 직무상의 행위의 적용제외(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즉 **직무 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 · 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 · 직원, 유관기관 · 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 · 공사 ·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⑷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가. 기간제한

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나)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기간제한 동안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위의 기간제한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해당되어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더라도 기간제한 규정 적용

가. 종전의 대상 · 방법 · 범위 · 시기 등을 확대 · 변경하는 경우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⑹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제삼자의 등의 기부행위제한(공직선거법 제114조, 115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⑺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금지사항

가. 상시제한

가) 관련근거 : 법 제86조 제4항, 제112조

나) 주요내용

- 각종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 배부 · 방송 금지
- 각종 표창시 부상은 상시제한(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상은 제외)
- 선거법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체의 기부행위는 상시제한

나. 선거일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가) 관련근거 : 법 제86조 제3항

나) 주요내용

– 현직단체장이 재출마할 경우

–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금품 · 기타 이익제공행위 금지

다.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가) 관련근거 : 법 제86조 제4항 · 5항

나) 주요내용

– 각종 홍보물 제작발행, 배부 금지(분기 1종 1회 불인정)

–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금지, 공공기관중 공공기관 주최이외의 행사 참석금지 (자치단체장에 대한 제한)

라.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가) 관련근거 : 법 제93조 제2항

나) 주요내용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기타 물품 등에 의한 광고 금지

– 후보자의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 금지

마.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가) 관련근거 : 법 제86조 제3항

나) 주요내용

– 각종 행사(선거법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 개최 · 후원 금지

5. 투명성 확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동 규칙 제5조)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29호 2008. 4. 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 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Ⅲ.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집행여부가 명확해진 내용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아래의 내용들이 그 동안 집행이 곤란했거나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이 명확해진 부분들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언론관계자에 대한 홍보용 지역 특산품 지급(단체장은 연 3회 이내)
2. 선거 1년 전이라도 국가시책 회의 등은 오 · 만찬 등 식사제공 가능
3.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른 현장종사자 식사 제공 및 격려금품 지급
4. 경찰서 · 군부대 · 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격려금품 지급
5. 재난복구종사자, 공연 · 행사 관계자, 체육선수대표에 대한 격려금품
6. 공공시설 개소에 따른 의례적 수준의 화환 · 화분 증정
7. 관내 유관 기관장 전 · 출입시 화환 · 격려금 등 지급
8. 환경미화원, 집배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등
9. 재난 · 재해복구 종사자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10.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11.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 지급

Ⅳ. 주요 집행기준 (별표)에 대한 해설

1.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 ·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해 설】

여기서 재난 · 사고의 경우란 재난특별지역(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선포된 경우와 대형 인명피해(대구 지하철사고 등)를 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경미한 사고나 사건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복구 종사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재난복구 종사자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 · 경찰공무원, 학생 등 재난복구를 위해 참여한 자를 말하며 이때 격려금품은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참여한 단체 대표자에게 지급하는걱이 타당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명의란?

광역자치단체는 00도, 00시

기초자치단체는 00시, 00군, 00구

※00도지사, 00도지사 홍길동 표기불가

다.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방범대원, 청원경찰, 방호원, 하천 및 그린벨트 감시원, 검침원, 청소원 등 취약지역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해 설】

상기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불우소외계층의 현장종사자에 대하여 격려성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무분별한 소속상근 직원 및 외부기관 직원중 위경우의 구성원에 해당 된다면 의례적 수준의 격려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다음의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⑵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⑶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⑸ 자선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언론기관 ·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관할 구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해 설】

-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일일찻집, 바자회, 음악회, 자치단체장 명의 등은 집행 불가
-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단체, 법인 등에서 행하는 광범위한 모금활동(수재의연금 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명의로 집행이 가능하다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 연 3회를 넘을 수 없다.

【해 설】

- 여기서 말하는 특산품이란 해당 자치단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 또는 판매되는 물품을 말하며 농 · 수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생산 · 가공되는 물품이라면 집행이 가능 하다고 할수 있다
- 의례적 범위란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나. 다른 기관 · 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해 설】

- 기념품은 의례적 수준에서 단체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 증정 또는 교환이 가능하며 자매결연,업무관련 MOU 등을 예를 들 수 있겠다.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해 설】

- 여기서 일반 민원인 즉 통상적 민원과 수시 방문 민원인은 제외하며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직무 등과 관련하여 찾아오는 내방객이라고 보면 된다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해 설】

-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1인당 4만원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주로 해당자치단체의 주요시책등을 설명하거나 설명한후 실시하는 오찬 또는 만찬이라고 보면 된다

3. 학술 · 문화예술 ·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전국체전, 시 · 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선수뿐만 아니라 임 · 직원은 집행대상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으나 , 후원회장, 후원회원, 선수가족 등에 대하여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나. 공연단, 악단, 영화 · 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직접 공연(행사)에 출연하는 자 뿐만 아니라 행사 관계자에 대하여도 집행 할 수 있다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 단체 ·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 정한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며, 동 기준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 · 단체 · 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관할 행정구역 내의 농 · 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 단체 · 센터

②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장애인 ·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 · 단체 ·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 자원봉사자로서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가능(일일찻집 등 간접적인 봉사활동은 집행 불가)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 간담회 · 행사

나.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라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 · 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해 설】

-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에의한 기관등을 말한다
-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립학교.공립병원, 국 · 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말한다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

⑵ 재난 예방 · 수습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개최되는 회의

⑶ 국가기관 또는 군부대 · 경찰서 · 교육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회의

【해 설】

- 일반적인 회의(본문)는 공직 선거일 1년전부터 예산집행을 할수 없다. 다만 단서에 의한 회의는 선거일 기간과 관계없이 예산의 집행이 가능하며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시정 및 구정 조정위원회 회의를 예를 들 수 있겠다.

바.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해 설】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 경비 등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고 기타 경비는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해야 한다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해 설】

– 현업(현장) 근로자가 아닌 공공근로자에게 격려금품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관내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격려금품 지급

【해 설】

– 전 · 의경, 청경 등 청사방호 관계직원 등에대한 격려금품이나 식사제공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 안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에서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역무 제공의 대가로서 공직선거법상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 · 면 · 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해 설】

– 상근직원에 지방의회 사무처(국) 직원 포함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사무처(국) 직원의 인사권, 복무상황 등은 자치단체의 권한이므로 사무처(국) 직원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상근직원의 범위는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포함)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해 설】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집행이 가능하나 상급 기관, 상급자에 대하여는 집행 불가하며 각종 표창시 부상은 상시제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상은 제외되므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 이전에 표창하는 경우로서 부상은 가능할 것이다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해 설】

–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종 평가시 입상한 부서(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시공무원에 대한 표창 시 부상 가능하다

라. 소속 상근직원 중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해 설】

– 현장근무자로는 청사방호, 주정차 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근무자,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등을 예를 들 수 있겠다.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재난, 재해,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주관부서 근무자 및 비상근무명령을 받은 자로 실질적인 근무를 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 · 도의 경우 시 · 군 · 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로서 그 기관 상근직원의 업무추진 노고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 차 방문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해 설】

-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집행이 가능하다.
- 생일은 본청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정원에 속하지 않는 상근직원(무기계약직)의 경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해 설】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기관을 말하며 단체의 범위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위원회, 협의회 포함)에 한한다.

☞ 단체의 범위로는 조례에 근거한 새마을회, 바르살기운동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예를 들 수 있겠다.

나.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 · 화분 ·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해 설】

- 관내의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의미. 행정구역상 관할 구역을 말하며 의례적 수준은 사회통념상 보통인 기준으로 거래하는 규모를 말한다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 · 부의금품

⑴ 지급대상 범위: 사망 또는 결혼

⑵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및 지방의회, 사업소, 시 · 군 · 구의 경우 읍 · 면 · 동 직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해 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근직원 사무처(국) 직원의 인사권, 복무상황 등은 자치단체의 권한이므로 사무처(국) 직원을 소속 상근직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소속 상근직원과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므로 통장 등 개인에게는 집행할 수 없을 것이다.
- 유관기관이란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하며 단체의 범위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위원회, 협의회 포함)에 한한다.(새마을회, 바르살기운동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 일반구[행정구] 간의 축의 · 부의금품 지급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관내의 범위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관할 구역내를 말하므로 일반구[행정구]의 경우 업무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기초자치단체 관내 범위내에서 구청과 주민센터간 축의 · 부의금품 지급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5호) 별표 제8호 나목에 의거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의 명의(지방자치단체장)로 축의 · 부의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속 상근직원(본청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만 지급이 가능하며, "(가)"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부단체장, 실 · 국장 및 실 · 과 · 소장 등)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속 상근직원(본청 및 지방의회, 사업소, 시 · 군 · 구의 경우 읍 · 면 · 동 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2008. 4. 2)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 · 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부단체장, 실 · 국장 및 실 · 과 · 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 · 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바, "(가)"{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명의}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외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 부단체장, 실 · 국장 및 실 · 과 · 소장이 축의 · 부의금품을 지급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 축의 · 부의금품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축의 · 부의금품 지급이 가능) 등에 대해서는 축의 · 부의금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다.
-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한 바,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축의 · 부의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할 것이다.

☞ 세출예산집행기준에는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 · 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 · 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 · 국장 및 실 · 과 · 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내에서 업무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예시) 시 · 군 사회복지과장이 관할 구역내 사회복지법인 임 · 직원의 축의 · 부의금 지급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 · 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내 실 · 국 또는 실 · 과 · 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본청, 제1관서, 읍 · 면 · 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 · 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건설행정과(광역시) → 건설과(자치구)

  ※ 광역시 건설국장이 자치구 건설과 직원 결혼 축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 · 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부단체장, 실 · 국장 및 실 · 과 · 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읍 · 면 · 동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지방의원에 대하여 축의 · 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 · 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해 설】

-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고 인사권 또는 예산편성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인 권한이 아닌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라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서 동 규칙 각 조문 및 별표 주요 각 호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적용도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선거법 저촉여부를 일일이 확인 없이 집행 가능토록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 · 법제화하기 위하여 1년여의 부처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직선거법령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를 집행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조문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판단되지만 동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앞으로 많은 토론과 연구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해설이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담당자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VI. 조문 정리

행정안전부령 제5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

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제1호나목 · 다목, 제2호가목 · 다목 · 라목, 제3호나목 · 다목, 제4호나목 · 다목 · 마목, 제5호가목, 제6호라목,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지출증빙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1.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 ·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복구 종사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방범대원, 청원경찰, 방호원, 하천 및 그린벨트 감시원, 검침원, 청소원 등 취약지역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다음의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⑵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⑶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자선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언론기관 ·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관할 구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 연 3회를 넘을 수 없다.

나. 다른 기관 · 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3. 학술 · 문화예술 ·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전국체전, 시 · 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공연단, 악단, 영화 · 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 단체 ·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2008.4.2)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4 업무추진비(203목)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 단체 ·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 · 단체 · 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관할 행정구역 내의 농 · 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 단체 · 센터

②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장애인 ·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 · 단체 ·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 간담회 · 행사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과 회의, 행사 또는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나.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라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 · 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자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

⑵ 재난 예방 · 수습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개최되는 회의

⑶ 국가기관 또는 군부대 · 경찰서 · 교육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회의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바.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에서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 · 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관내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격려금품 지급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 안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에서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 · 면 · 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소속 상근직원 중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노고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 · 도의 경우 시 · 군 · 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로서 그 기관 상근직원의 업무추진 노고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나.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 · 화분 ·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 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 · 부의금품

⑴ 지급대상 범위: 사망 또는 결혼

⑵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및 지방의회, 사업소, 시 · 군 · 구의 경우 읍 · 면 · 동 직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2008.4.2)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4 업무추진비(203목)

나. 규칙 [별표] 8호 나목 ⑵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 · 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 · 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 · 국장 및 실 · 과 · 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내에서 업무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예) 시 · 군 사회복지과장이 관할 구역내 사회복지 법인 임 · 직원의 축의 · 부의금 지급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 · 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소속 상근직원 또는 제1관서 · 하급기관 관련부서

예시) 건설행정과(광역시) → 건설과(자치구)

※ 광역시 건설국장이 자치구 건설과 직원 결혼 축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 · 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부단체장, 실 · 국장 및 실 · 과 · 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읍 · 면 · 동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지방의원에 대하여 축의 · 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 · 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